



명쾌한 수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일까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과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와 판단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씨는 2016년 10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와 주차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B씨에게 폭력을 가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 손으로 경찰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자석에 태우려고 하자, 경찰의 정강이 부분을 양팔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경찰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용이한 상황이었는바, 도망의 염려가 있었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당시 상황은 경찰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즉시 체포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찰 폭행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는지 여부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와 판단 방법

원심 판결

1. 피고인이 경찰을 밀친 것은 경찰의 공무집행 중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금부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 21537 판결을 통해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문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법원 판례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게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와 판단 방법에 관하여는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3. 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乙이 甲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乙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乙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판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乙의 가슴을 밀칠 당시 乙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 내지 순찰근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乙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들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나 직무집행, 현행범 체포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공관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고 판시하였다.

최종 정리

이 사건을 정리하면,

1. 경찰의 출동은 예정된 순찰근무의 일환이었으며 경찰이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고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직무수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